

2019-1학기 대학(원)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(납부연기) 안내

1. 신청 기간 : 2019. 2. 19.(화) ~ 2. 27.(수) 17:00까지
2. 신청 대상
 - 가.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직한 경우
 - 나. 본인 또는 보호자가 파산한 경우
 - 다. 본인 또는 보호자가 법원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
 - 라.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
 - 마. 그 밖에 부득이한 경제적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
3. 제출서류 : 분할납부신청서(또는 납부연기신청서), 등록금납부서약서, 관련 증빙서류 각 1부.
 - 가.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서 외 실업급여 지급관련 서류
 - 나.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(신용회복위원회 www.ccrs.or.kr)
 - 다. 파산으로 인한 법원 결정서(파산선고 또는 압류통지서)
 - 라. 본인 및 가족의 진료(입원)비 납부영수증
 - 마. 과세(납세)증명서,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증명서(국세청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) 등
4. 제출처 : 재무팀(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706호 ☎ 031-670-5474)
5. 납부 방법 : **최초등록기간(2019. 2. 22. ~ 2. 28.)내 반드시 등록금 총액의 1/4 이상 (납부연기신청자의 경우 1/3이상) 납부**한 후, 잔여 등록금은 차수별 납부기한 내 납부 완료하여야 함.

구분	차수	납부기간	납부금액	제출서류
등록금 분할납부	1차	2019.2.22.(금) ~ 2.28.(목)	등록금액의 1/4 이상	-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- 등록금 납부서약서 1부 - 증빙서류 1부
	2차	2019.3.18.(월) ~ 3.22.(금)	등록금액의 1/4 이상	
	3차	2019.4.16.(화) ~ 4.19.(금)	등록금액의 1/4 이상	
	4차	2019.5.13.(월) ~ 5.17.(금)	잔여금액	
등록금 납부연기	1차	2019.2.22.(금) ~ 2.28.(금)	등록금액의 1/3 이상	-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서 1부 - 등록금 납부서약서 1부 - 증빙서류 1부
	2차	2019.4.16.(화) ~ 4.19.(금)	잔여금액	

6. 유의사항

- 가. 분할납부(납부연기) 신청자가 1차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(납부연기) 대상에서 제외되며,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- 나. 분할납부(납부연기) 신청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함